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719호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5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

| 구분 |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| 위치 | 관할 시·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경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안양시 평촌대로, 흥안대로, 시민대로, 안양로 일원 | 경기도 |
| 2 |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 | 인천광역시 |
| 3 | 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| 인천광역시 |
| 4 | 인천 영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, 영종동, 중산동 일원 | 인천광역시 |
| 5 |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| 인천광역시 |
| 6 | 울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원 | 울산광역시 |
| 7 | 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 | 대구광역시 |
| 8 | 경북 경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원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9 | 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| 경상남도 |
| 10 | 전남 해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|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일원 | 전라남도 |
| 11 | 경기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변경)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 | 경기도 |

| 구분 | 시범운영지구의 명칭 | 위치 | 관할 시·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 | 강원 강릉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변경) | 강릉시 일원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|
| 13 |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변경) |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(예천북합커뮤니티센터 ~ 하회마을) | 경상북도 |
| 14 | 제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변경) | 제주시청-서귀포1청사 구간 일원 | 제주특별자치도 |
| 15 |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변경) | 청주공항~오송역~세종터미널~ 반석역~카이스트 구간 일원 |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대전광역시 |
| 16 |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 | 서울특별시 |
| 17 |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및 국회 내부 일원 | 서울특별시 |
| 18 |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충청남도 예산군,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원 | 충청남도 |
| 19 |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일원 | 제주특별자치도 |
| 20 |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대구광역시 수성구, 달성군, 서구 일원 | 대구광역시 |
| 21 |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(정정) | 서울특별시 종로구, 중구, 동대문구, 성동구 (청계천로) 일원 | 서울특별시 |

경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기도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기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|----------|
| 1 | 안양시 평촌대로, 시민대로 일원 / 시청사거리 ~ 비산체육공원 | 3.4km |
| 2 | 안양시 시민대로, 흥안대로, 안양로 일원 / 인덕원역 ~ 범계역 ~ 안양역 | 7.2km |
| 계 | | 10.6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심야/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스 공급을 통해, “언제나 어디서나”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교통도시 구현
 -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시실증과 기존 운수서비스업과의 발전적 상생협력 도모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 해소를 위하여 기존 버스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고정노선 기반의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제공(주간 : 안양시청-비산체육공원, 야간 : 안양역-범계역-인덕원역)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관제센터, 스마트도로인프라, 자율주행관제플랫폼 구축
 - ITS 인프라를 통해 신호, 돌발상황, 불법주정차 정보연계 등 자율협력주행 지원 및 CCTV를 활용한 자율주행차량 운행·관제 고도화
 - 안전한 자율주행 운영을 위한 노면표지, 버스정류장, 도로표지판 신설 등 도로 환경 개선
 - 자율주행 테스트랩 구축 및 산·학·연, 민간에 제공(관제센터 인프라, 데이터)하여 기술 개발/실증 지원
 - 시범운영지구 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
 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충전소 제공(자율주행관제센터 내)
 - 자율주행관제센터(스마트도시통합센터) 내 홍보관을 구축하여 자율주행과 연계된 홍보 및 시연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
 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영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 - 구간별 제한속도(50km/h)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
 - 운행시 운전자, 안전관리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,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
 - 경기도의 버스, 택시 등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악천후,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 -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범운영지구 관련 법령, 행정규칙, 경기도 조례를 준수해야 함
 - 여객에게 운수사업자, 요금,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,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 결제내역을 제공해야 함
 - 경기도,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,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함
 - 경기도, 안양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실적 등 한정운수 면허와 관련된 자료(시범운영지구 성과보고서 작성시 필요 자료 등)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
 - 월별/연간 운행실적 등 경기도, 안양시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해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대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|---|----|
| 유상서비스 | 안양시 관내 자율주행 시내버스 (주간 : 안양시청-비산체육공원, 야간 : 안양역-범계역-인덕원역) | 2대 |

- 기타 :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, 안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기도청(www.gg.go.kr), 안양시청(www.anyang.go.kr)
- 문 의 처 :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(031-8008-5721),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(031-8045-5350)

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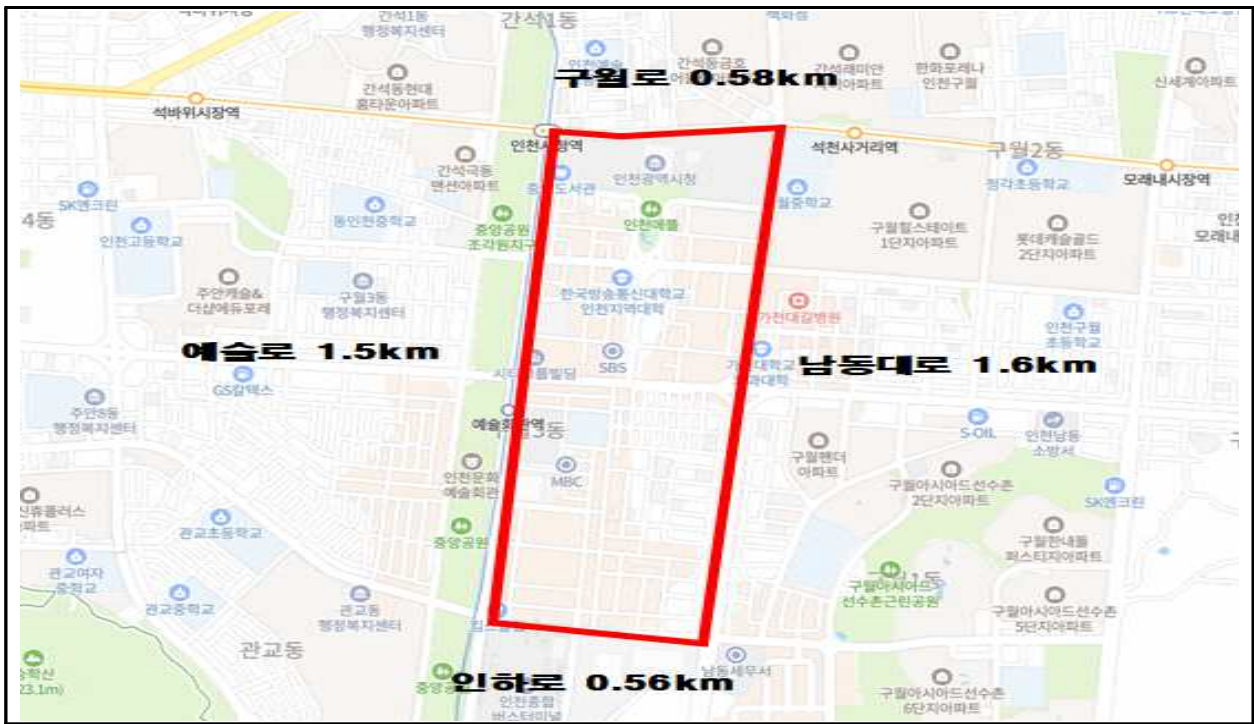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인천 구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인천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인천광역시 관내(구월로 / 시청역 사거리~석천 사거리) | 0.58km |
| 2 | 인천광역시 관내(남동대로 / 석천 사거리~남동경찰서 사거리) | 1.6km |
| 3 | 인천광역시 관내(인하로 / 터미널 사거리~남동경찰서 사거리) | 0.56km |
| 4 | 인천광역시 관내(예술로 / 터미널 사거리~시청역사거리) | 1.5km |
| 계 | | 4.24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인천광역시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
 -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
 -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
 -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구월로 → 남동대로 → 인하로 → 예술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,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
 - 시범운영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4대('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|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| 4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
-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(032-440-4583)

인천 송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인천 송도(센트럴파크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인천광역시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|----------|
| 1 | 인천광역시 관내(인천타워대로 / G타워 앞 사거리~인천대입구역 사거리) | 0.85km |
| 2 | 인천광역시 관내(테크노파크로 / 롯데마트 송도점~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) | 0.82km |
| 3 | 인천광역시 관내(하모니로 / 미추홀공원 북측사거리~송도컨벤시아 사거리) | 0.43km |
| 4 | 인천광역시 관내(센트럴로 / 송도컨벤시아 사거리~송도IBS빌딩앞 사거리) | 1.5km |
| 5 | 인천광역시 관내(아트센터대로 / 송도IBS빌딩앞 사거리~G타워 앞 사거리) | 0.05km |
| 계 | | 3.65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송도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
 - 기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
 -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
 -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아트센터대로 → 센트럴로 → 하모니로 → 테크노파크로 → 인천타워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,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
 - 시범운행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4대('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|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| 4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
-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(032-440-4583)

인천 영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인천 영종(하늘도시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인천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인천광역시 관내(영종대로 / 은골 사거리~중산동 1999) | 9.7km |
| | 계 | 9.7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영종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
 - 신규 교통수단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
 - 영종도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연계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
 -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선도지역 도약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영종 내 주거지역과 지하철 교통 연계를 위한 영종대로 고정노선 자율주행 서비스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,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 등
 - 시범운영지구 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4대('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셔틀 |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| 4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
-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(032-440-4583)

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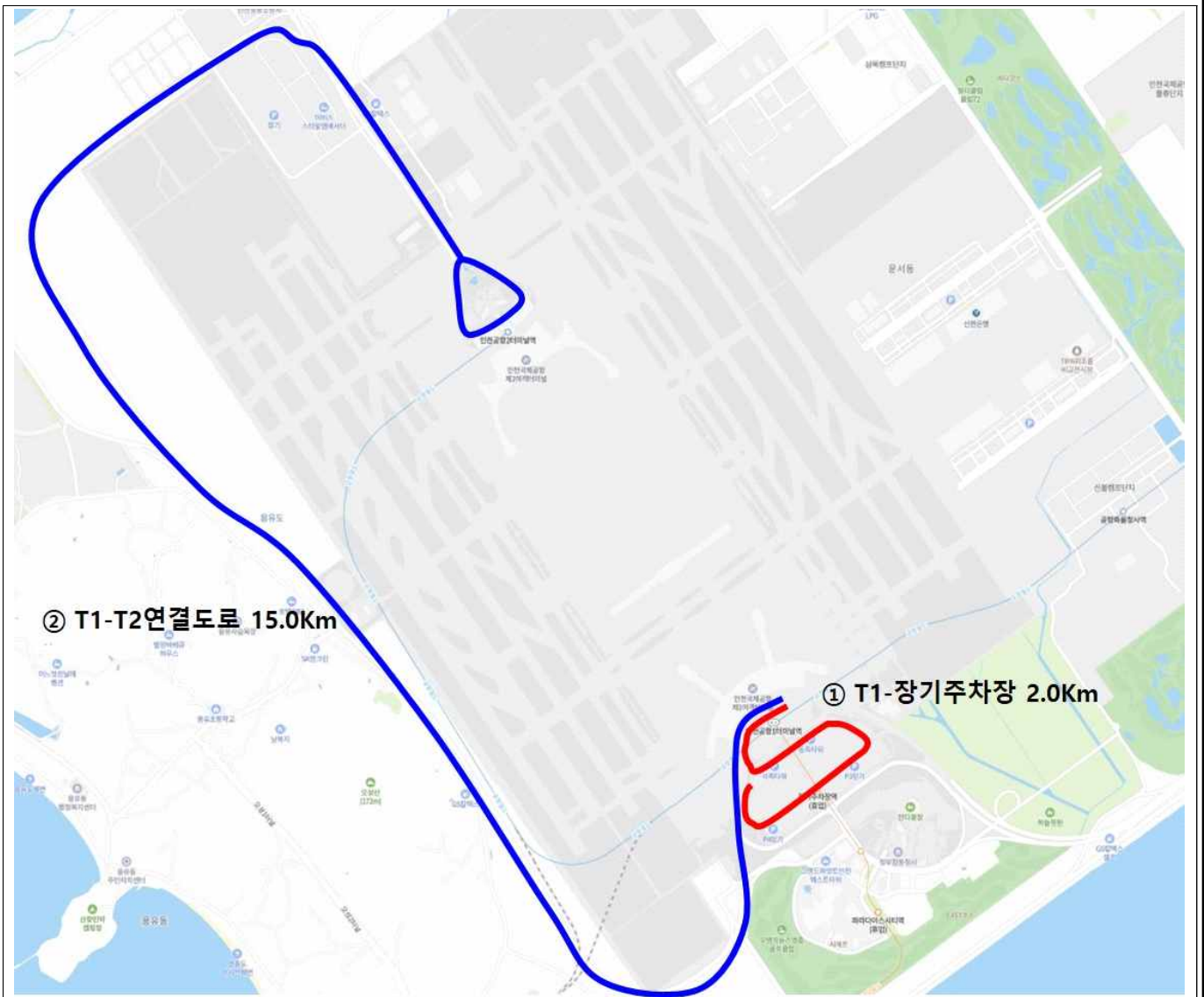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인천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|----------|
| 1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(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↔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) | 2.0km |
| 2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(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↔ 제2여객터미널) | 15.0km |
| 계 | | 17.0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스마트 신기술인 자율주행을 접목하여 스마트 리딩공항의 위상 제고
- 장기적으로 공항전역의 기존 버스셔틀 노선을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로 전환 계획
- 국토부와 인천광역시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맞춰 공기업으로서 국민이자 여객에게 감동 제공

○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인천국제공항 T1 장기주차장 ↔ T1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서비스
- 인천국제공항 T1 ↔ T2 연결도로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안전운전자, 보험가입 등 제반사항 준수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관리자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고시 즉각 대응절차 및 사고비상대응 체계도를 기수립
-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는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

○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

- 제1여객터미널↔T1 장기주차장, T1↔T2 연결도로 노선 자율주행셔틀 무상운송 계획
- 인천국제공항공사는 『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』 및 『도로교통법』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범운행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인천국제공항공사(www.airport.kr)
- 문의처 :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(032-440-4583),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팀(032-741-2501)

울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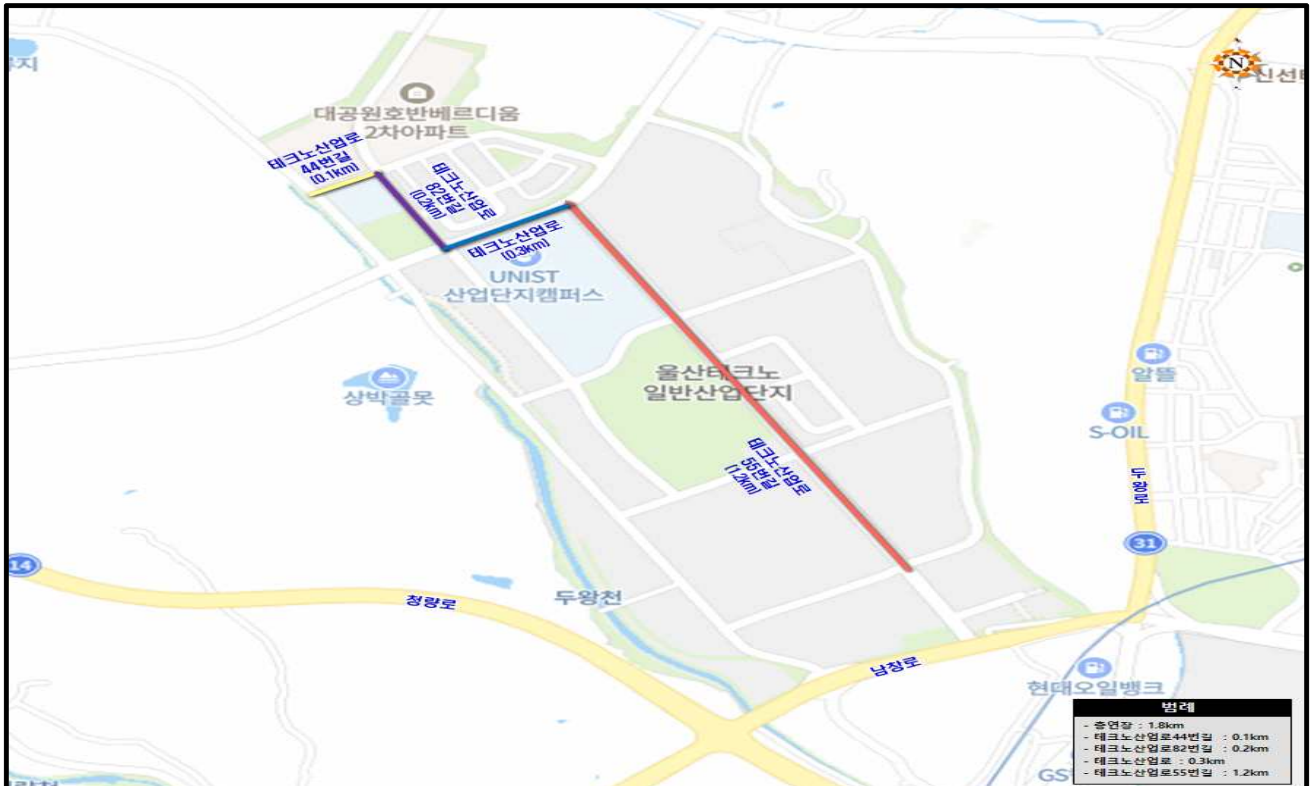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울산(울산테크노산단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울산광역시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|----------|
| 1 | 테크노산업로 55번길(남창로입구 사거리~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삼거리) | 1.2km |
| 2 | 테크노산업로(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삼거리~산학융합지구 사거리) | 0.3km |
| 3 | 테크노산업로 82번길(산학융합지구 사거리~호반베르디움 사거리) | 0.2km |
| 4 | 테크노산업로 44번길(호반베르디움 사거리~호반베르디움 삼거리) | 0.1km |
| 계 | | 1.8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시범운영지구 내 대학, 혁신기관, 기업들이 집적화된 구역에 노선을 설정하여 대중교통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
 -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기업으로 구성된 울산지역 자동차 산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확보를 통한 산업전환 수요 대응 필요

○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울산테크노산단 일대를 운행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시범운영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
-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또는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
-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
- 시범운영지구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대('24년 1대, '25년부터 2대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도심순환형 자율주행셔틀 | 도심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 | 2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울산광역시 홈페이지(www.ulsan.go.kr)
-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주력산업과(052-229-2864)

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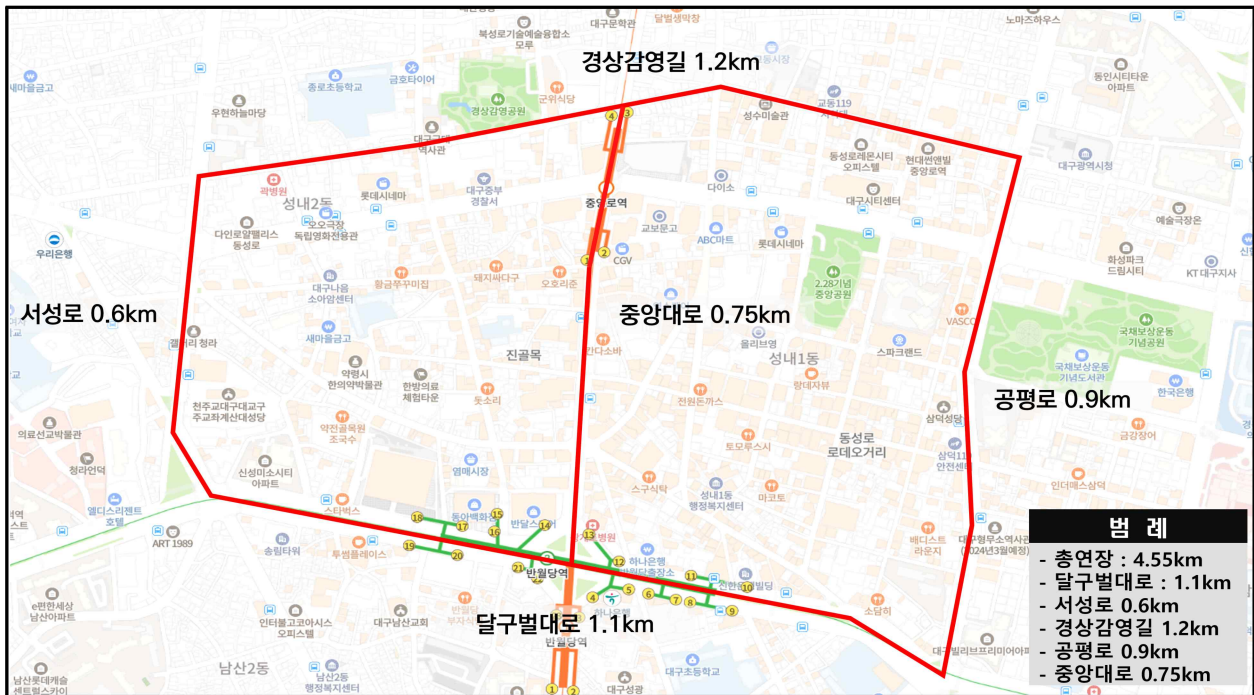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대구 동성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대구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대구 중구 관내(달구벌대로 / 봉산육거리~계산오거리) | 1.1km |
| 2 | 대구 중구 관내(서성로 / 계산오거리~서성로 네거리) | 0.6km |
| 3 | 대구 중구 관내(경상감영길 / 서성로 네거리~ 시청 네거리) | 1.2km |
| 4 | 대구 중구 관내(공평로 / 시청 네거리~봉산육거리) | 0.9km |
| 5 | 대구 중구 관내(중앙대로 / 중앙대로 네거리~반월당 사거리) | 0.75km |
| 계 | | 4.55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대구 동성로에 새로운 교통수단(순환셔틀)을 공급하여 시민·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
 -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이용자의 실시간 수요에 따라 운행, 편리함과 대기시간 최소화 등으로 모빌리티 혁신 추진
 -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달구벌대로 → 서성로 → 경상감영길 → 공평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 - 달구벌대로 → 서성로 → 경상감영길 → 중앙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 - 달구벌대로 → 중앙대로 → 경상감영길 → 공평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, 필요시 도로노면표시 등
 -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효과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유관부서, 지방경찰청, 대구시 설공단, 연구기관, 한정 운수 사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‘대구광역시 시범 운영지구 협의회’ 운영
 - 자율주행시범운영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‘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’를 제정 및 지속 업데이트 진행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,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름
- 운행 예정 구역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, ODD Exit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어야함
-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3대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|----|
|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| 중구 달구벌대로 ~ 서성로 ~ 경상감영길 ~ 중앙대로 ~ 공평로, 동성로 일대를 운행하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서비스 | 3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·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차량운행간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유관부서 및 ‘대구광역시 시범 운영지구 협의회’에 관련 사항을 제출 필수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대구광역시(<https://www.daegu.go.kr>) ⇨ 정보공개 ⇨ 알림정보 ⇨ 고시공고
- 문 의 처 :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(053-803-6382)

경북 경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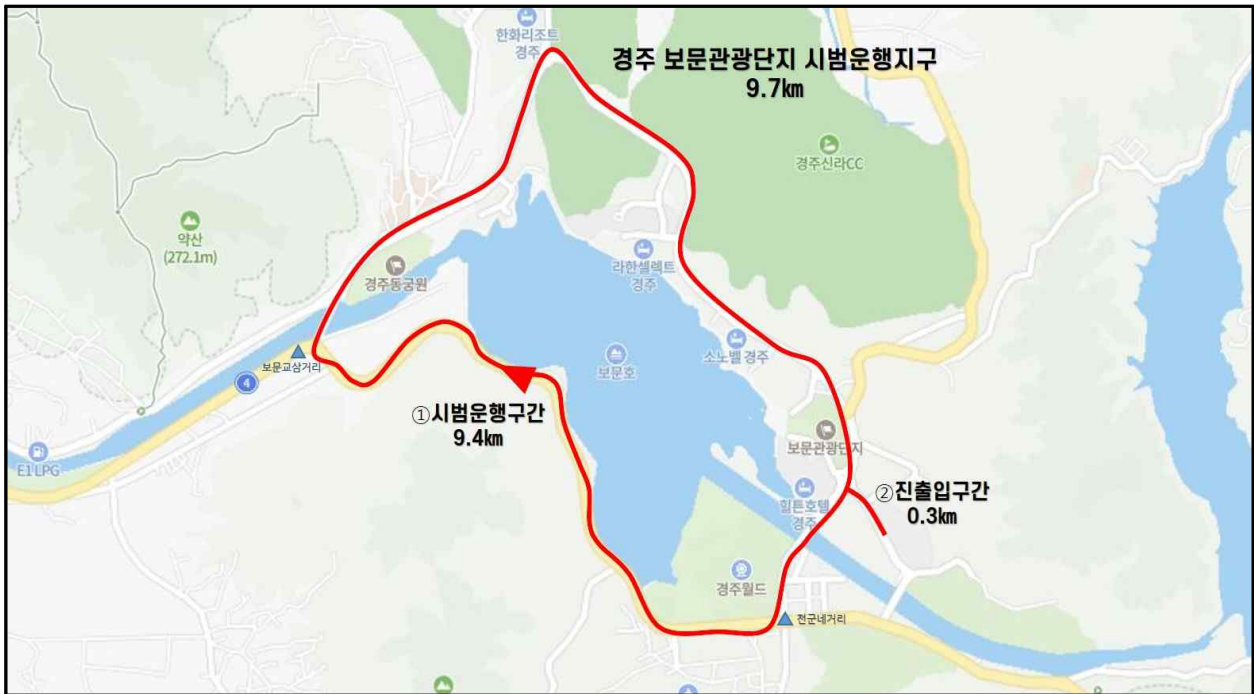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북 경주(보문관광단지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상북도 경주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경주시 보문로 / (보문교삼거리~천군네거리) | 5.7km |
| 2 | 경주시 경감로 / (천군네거리~보문교삼거리) | 3.7km |
| 3 | 경주시 엑스포로 / (힐튼호텔네거리~화백컨벤션입구) | 0.3km |
| 계 | | 9.7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관광과 첨단 교통이 결합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 시대 개척
 - 지방 기업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 실현
 -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보문관광단지 내 교통현안 문제 해결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보문호(보문로~경감로)를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고정 노선형 셔틀버스 운행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경주시 교통정보센터 내 자율주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운행 지원
 - 경상북도, 경주 경찰서, 경주시(교통행정과,도로과 등)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여 안전관리체계 수립
 - 전용차고지, 노면 표시 및 안내 표지판 등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
 - 안전운행 매뉴얼 제작, 상시점검 체계 구축
 - 신호개방, C-ITS 등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대('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고정 노선형 자율주행셔틀 | 보문호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고정 노선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| 2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상북도 경주시 홈페이지(www.gyeongju.go.kr)
- 문 의 처 : 경상북도 교통정책과(054-880-2698),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정보센터(054-779-6846)

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남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상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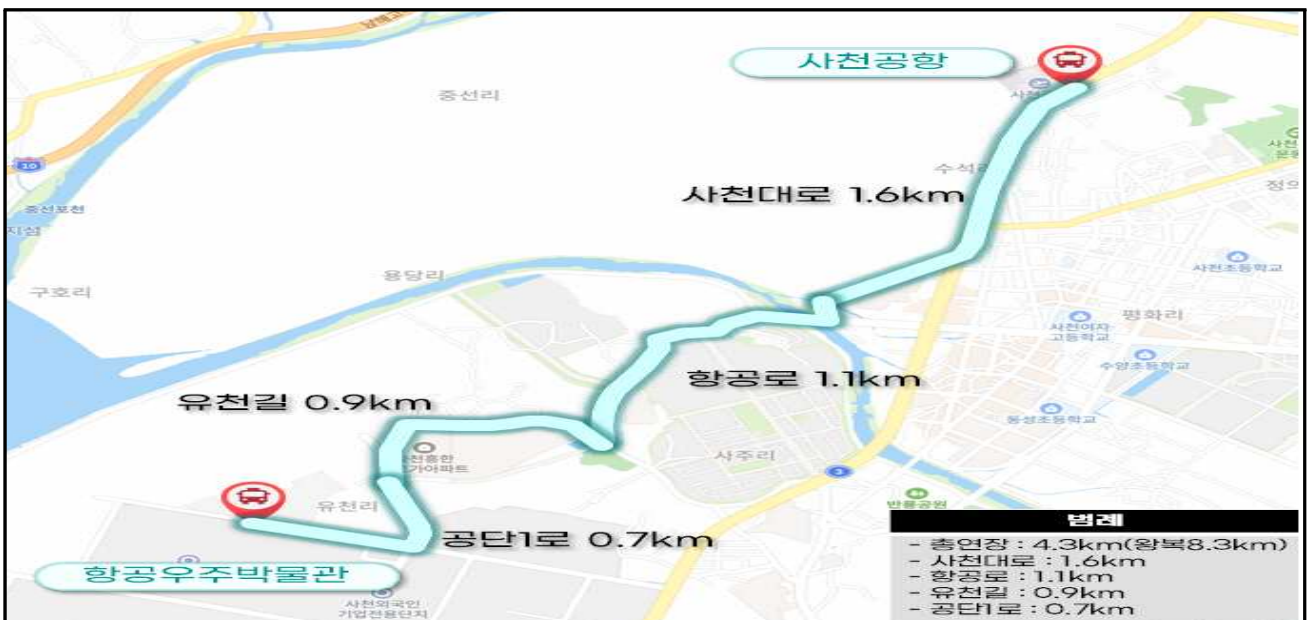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- (1단계) 구간 1 사천공항 ~ 항공우주박물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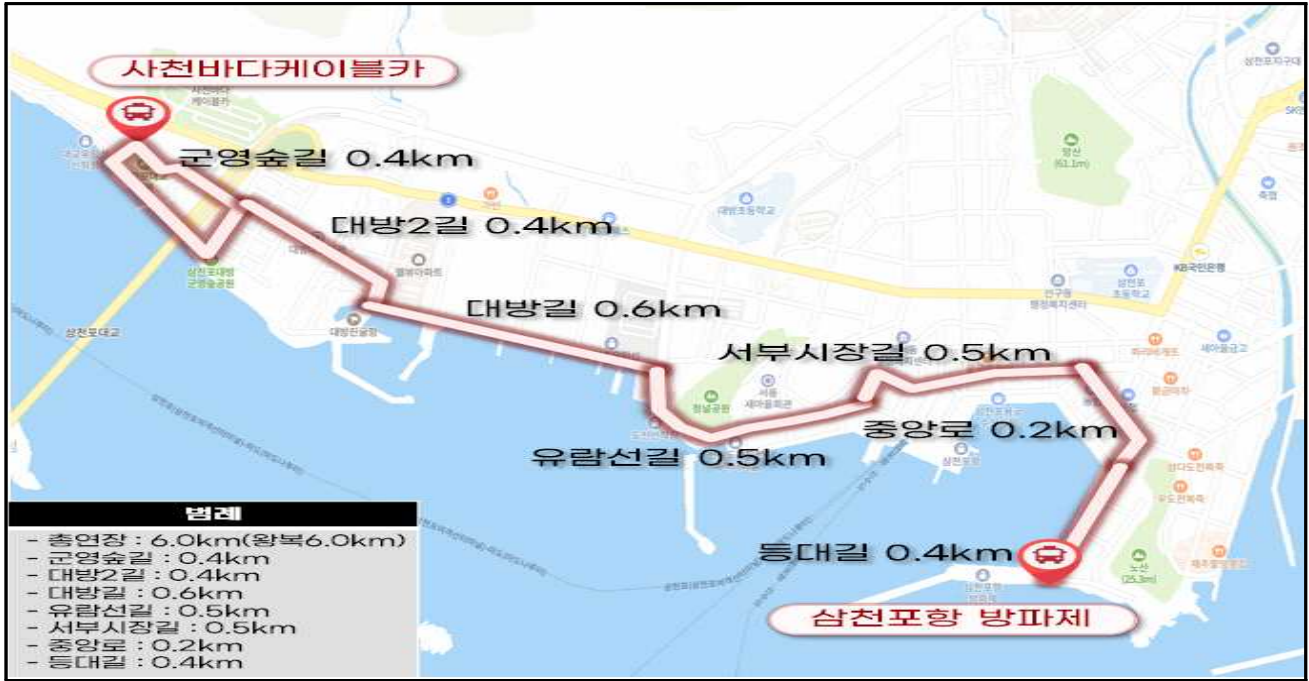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사천대로 / 사천공항 ~ 용당2교 | 1.6km |
| 2 | 항공로(1) / 용당2교 ~ 유천소류지 | 1.1km |
| 3 | 항공로(2) / 유천소류지 ~ 에르가APT 앞 회전교차로 | 0.9km |
| 4 | 공단1로 / 에르가APT 앞 회전교차로 ~ 항공우주박물관 | 0.7km |
| 소 계(1단계 : 구간 1 사천공항 ~ 항공우주박물관) | | 4.3km |
| 1 | 대방2길(1) / 사천바다케이블카 ~ 군영숲길 교차로 | 0.4km |
| 2 | 대방2길(2) / 군영숲길 교차로 ~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| 0.4km |
| 3 | 대방길 /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~삼천포유람선 | 0.6km |
| 4 | 유람선길 / 삼천포유람선 ~ 서부시장 삼거리 | 0.5km |
| 5 | 서부시장길 / 서부시장 삼거리 ~ 더원호텔 앞 오거리 | 0.5km |
| 6 | 노산공원길 / 더원호텔 앞 오거리 ~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| 0.2km |
| 7 | 등대길 / 삼천포항 공영주차장 ~삼천포항 방파제 | 0.4km |
| 소 계(2단계: 구간 2 사천바다케이블카 ~ 삼천포항 방파제) | | 3.0km |
| 총 계 | | 7.3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- (1단계) 구간 1 사천공항 ~ 항공우주박물관



○ (2단계) 구간 2 사천바다케이블카 ~ 삼천포항 방파제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도시 미래 경쟁력 강화
- 우주항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발굴
- 사천특화형 스마트도시를 위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 환경 구축
- 사천공항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과 주요 해양관광지 교통혼잡 해소

○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(1단계) 사천공항 ↔ 항공우주박물관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
- (2단계) 사천바다케이블카 ↔ 삼천포항 방파제를 순환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를 위한 노면표시,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
- 자율주행서비스를 위한 전용 정류장,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 등 제공
-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유지

- 시험운행지구 '안전관리 위원회' 조직 구성 및 운영
- 예비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
 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,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3대('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| 구 분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노선형(유상운송) - 대중교통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|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| 1대 |
| 노선형(유상운송) - 관광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|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| 2대 |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상남도(www.gyeongnam.go.kr), 사천시(www.sacheon.go.kr)
- 문 의 처 : 경상남도 교통정책과(055-211-4134), 사천시 우주항공과(055-831-3485)

전남 해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전남 해남(솔라시도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전라남도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|----------|
| 1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군도21호선(1) / 산이정원입구 교차로~구성교회 교차로) | 2.1km |
| 2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동서3길(2) / 구성교회 교차로~솔라시도CC 출구 교차로) | 0.4km |
| 3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솔라시도CC 내부도로(3) / 솔라시도CC 입구 교차로~솔라시도CC 출구 교차로) | 0.9km |
| 4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동서대로(4) / 산이정원 교차로~솔라시도CC 입구 교차로) | 2.0km |
| 5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동서1길(5) / 산이정원 교차로~산이정원 주차장 입구) | 0.4km |
| 6 | 솔라시도 (구성지구) 관내(동서대로(6) / 솔라시도CC 출구교차로~데이터센터 교차로) | 2.4km |
| 계 | | 8.2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

-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구현되는 솔라시도만의 스마트시티의 표준 모델 실현
 - 해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스마트시티 확산 기여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군도21호선(1) → 동서3길(2) → 솔라시도CC 내부도로(3) → 동서대로(4)를 고정노선으로 순환하는 레저형(Leisure Type) 자율주행 서비스
 - 동서1길(5) → 동서대로(4) → 솔라시도CC 내부도로(3) → 동서대로(6)를 고정노선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형(Public Transport Type)의 자율주행 서비스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내 및 정류장 표지판,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구축
 - 자율주행차 전용 차고지, 충전시설 및 지원 인프라(스마트 IoT), 관제센터 구축
 -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남군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민간 운영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, 견인업체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성
 - 관계기관(경찰청, 소방서, 응급의료센터)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시 신고·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

| 구 분 | 운송 방식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|-------|---|----|
| 레저타입 (Leisure Type) 순환노선형 | 무상운송 | 관광지(산이정원)과 생활권(커뮤니티센터)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| 4대 |
| 대중교통 타입 (Public Transport Type) 고정 노선형 | | 도시 내 간선도로(동서대로)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| 3대 |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전라남도 홈페이지(www.jeonnam.go.kr)
- 문 의 처 :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(061-286-3942)

경기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기도 판교(제로시티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기도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성남시 수정구 일부 구역 (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 | 0.18km ² , 2.16km |
| 2 | 성남시 분당구 일부 구역 (판교 제1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 | 1.16km ² |
| 3 | 대왕판교로 일부 도로(구역 간 연결) | 0.53km |
| 계 | | 1.34km ² , 2.69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변경목적
 -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 자율주행 인프라구축 완료 및 1~2구역 연결교량 개통됨에 따라,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근로자 및 거주자의 이동성·편의성 향상 도모
 - 시범운영지구 운행가능영역(ODD) 확대 운영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화를 통한 편의성 증진 도모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판교2TV 2구역 → 경기기업성장센터 → 판교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판타G버스 대중교통 서비스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(국토부 고시 제 2022-348호 참조)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
 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 - 60km/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
 -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해야 함
 - 경기도가 제공하는 V2X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
 - 고객 탑승(예약) 관리, 배차 및 차량 운행관리 등 서비스 필요 제반사항을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함
 -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요청하는 관제, 데이터 연계 등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함
 - 경기도의 버스, 택시 등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약천후 및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 -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령, 행정규칙, 경기도 조례를 준수해야 함
 - 여객에게 운수사업자, 요금, 노선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하며,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 결제내역을 제공해야 함
 -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
 - 경기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영업장 출입을 허용하고 자동차 운행실적 등 한정운수 면허와 관련된 자료(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시 필요 자료 등)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30대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기도청(www.gg.go.kr)
- 문의처 :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(031-8008-5721)

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: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도 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연장 |
|----|--|--------|
| 1 | 도심~관광지 연계노선(강릉역~강릉고속터미널~오죽헌) | 9.8km |
| 2 | 뮤지엄셔틀노선(올림픽뮤지엄~초당(강문)) | 3km |
| 3 | 해안경관 운행노선(오죽헌~초당(강문)~안목해변) | 10km |
| 4 | 마실버스 운행노선(연곡면사무소~삼산보건소 연결노선) | 13km |
| 5 | 시티투어버스 운행노선(안목해변~경포해변~사근진해변~순곳해변~사천진해변~영진해변~주문진해변) | 17.7km |
| 계 | | 53.5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(국토부 고시 제2022-348호 참조)

- 지정목적
 -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
 -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·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, 도심과 관광지 연계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2-348호 참조)

○ 시범운행지구 적용되는 규제 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·구간

- 강릉역→교동철교→강릉고속버스터미널→솔올공연장→풋살경기장옆→오죽헌→올림픽뮤지엄을 순환하는 도심-관광지 연계노선,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올림픽뮤지엄→녹색도시체험센터→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→초당(강문)을 왕복 운행하는 B형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뮤지엄 셔틀 노선
- 오죽헌→선교장→경포가시연습지→홍장암→(스카이베이호텔)→경포호수광장→초당(강문)→세인트존스호텔→송정해변→안목해변을 왕복 운행하는 역사문화 해안경관 노선,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연곡면사무소 → 삼산보건소를 왕복하는 벽지노선 운행 “자율주행 마실버스 서비스”
- 안목해변 → 주문진해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“자율주행 시티버스 서비스”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제공
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(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)
-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
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
-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운영 예산 마련 활동을 통한 사업지원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 준수 사항 :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- 허가대수의 상한: 총 15대

| 구 분 | 연장(km) | 운행경로 | 대수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|
| 도심-관광지 연계노선 | 9.8 | 강릉역, 고속버스터미널, 오죽헌 (9.8km, 순환) | 15대 |
| 뮤지엄셔틀노선 | 3 | 올림픽뮤지엄, 초당(강문) (3km, 왕복) | |
| 역사문화-해양경관 노선 | 10 | 오죽헌, 초당(강문),안목해변 (10km, 왕복) | |
| 자율주행 마실버스 | 13 | 연곡면사무소, 삼산보건소를 왕복하는 벽지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| |
| 자율주행 시티버스 | 17.7 | 안목해변, 주문진해변을 왕복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(해양경관노선 중복구간 5.3km 제외) | |
| 합 계 | 53.5 | - | |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강릉시청(<https://www.gn.go.kr/>) ⇨ 정보공개 ⇨ 알림정보 ⇨ 고시공고
- 문 의 처 : 강원도청 교통과(033-249-3605), 강릉시청 ITS추진과(033-640-5660)

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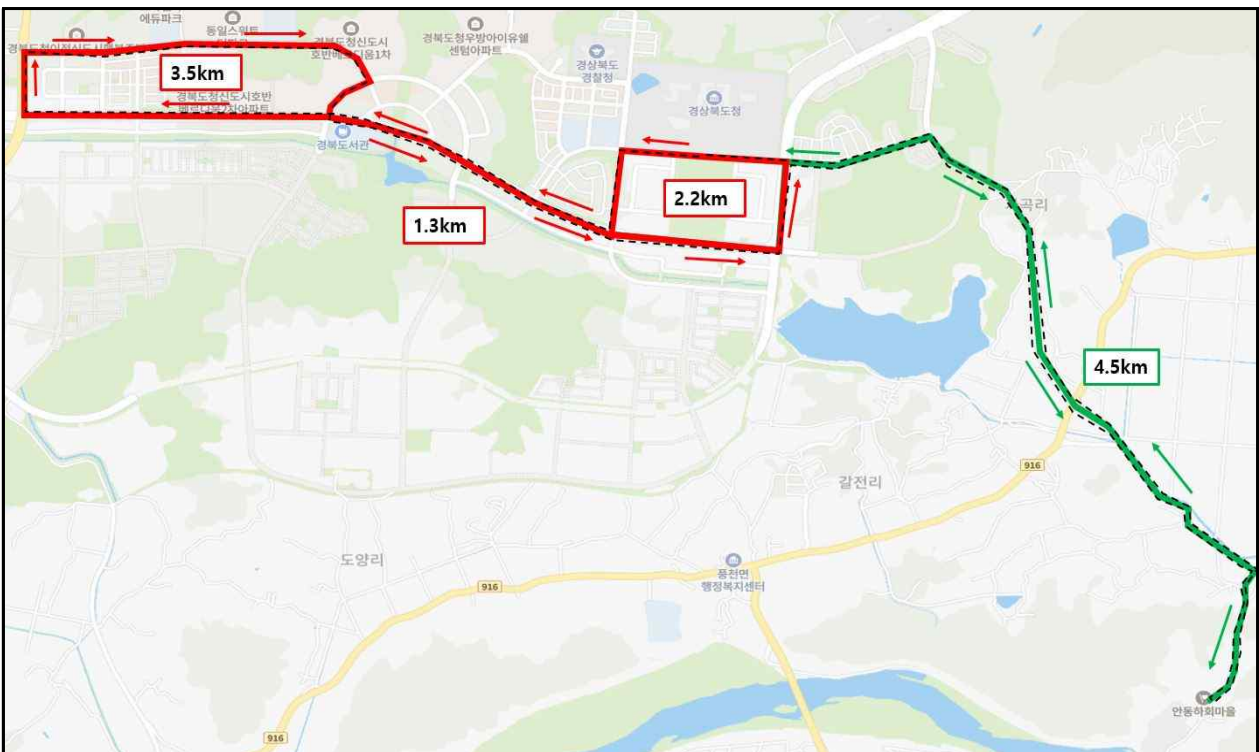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상북도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(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 ~ 하회마을) | 11.5km |
| 계 | | 11.5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* 붉은색 : 5차지정('23.6.27), 초록색 : 6차지정('23.12.5)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지정목적
 - 도청 신도시 대중교통 공존형 도심 자율주행으로 대중교통 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체계 개선
 - 주요 관광지(하회마을), 벽지노선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고으로 이동성 강화
 - 시범운영지구 지정 및 조례 제정으로 도심 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
-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영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 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예천복합커뮤니티센터 ~ 경북도청 구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
 - 경북도청 ~ 하회마을 구간 대중교통 공존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
-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영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 및 지원시설 지원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
 - 자율주행 관련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C-ITS 등 주행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
 - 기타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
 -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, 관계기관(안동시, 예천군, 경북경찰청 등) 등 비상연락체계 구성
 - 경상북도, 경북경찰청, 안동시, 예천군, 교통·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,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영지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안전강화
- 시범운영지구 지원 방안
 - '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' 제정 추진('24. 上) 통해 시범운영지구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, 자율주행차량 운영비 등 예산 확보·지원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
 -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, 운행시간 이용요금 등에 대해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 - 운행 중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대응 요령을 포함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
 - 카메라 또는 기타 장치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 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개입하여 운전해야 함
 - 월별 분기별 운행실적 및 정기 성과보고서 등 기타 경상북도의 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2대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노선형 셔틀서비스 | 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는 셔틀 서비스 | 2대 |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상북도(www.gb.go.kr)
- 문 의 처 : 경상북도 교통정책과(054-880-2698)

제주 자율주행차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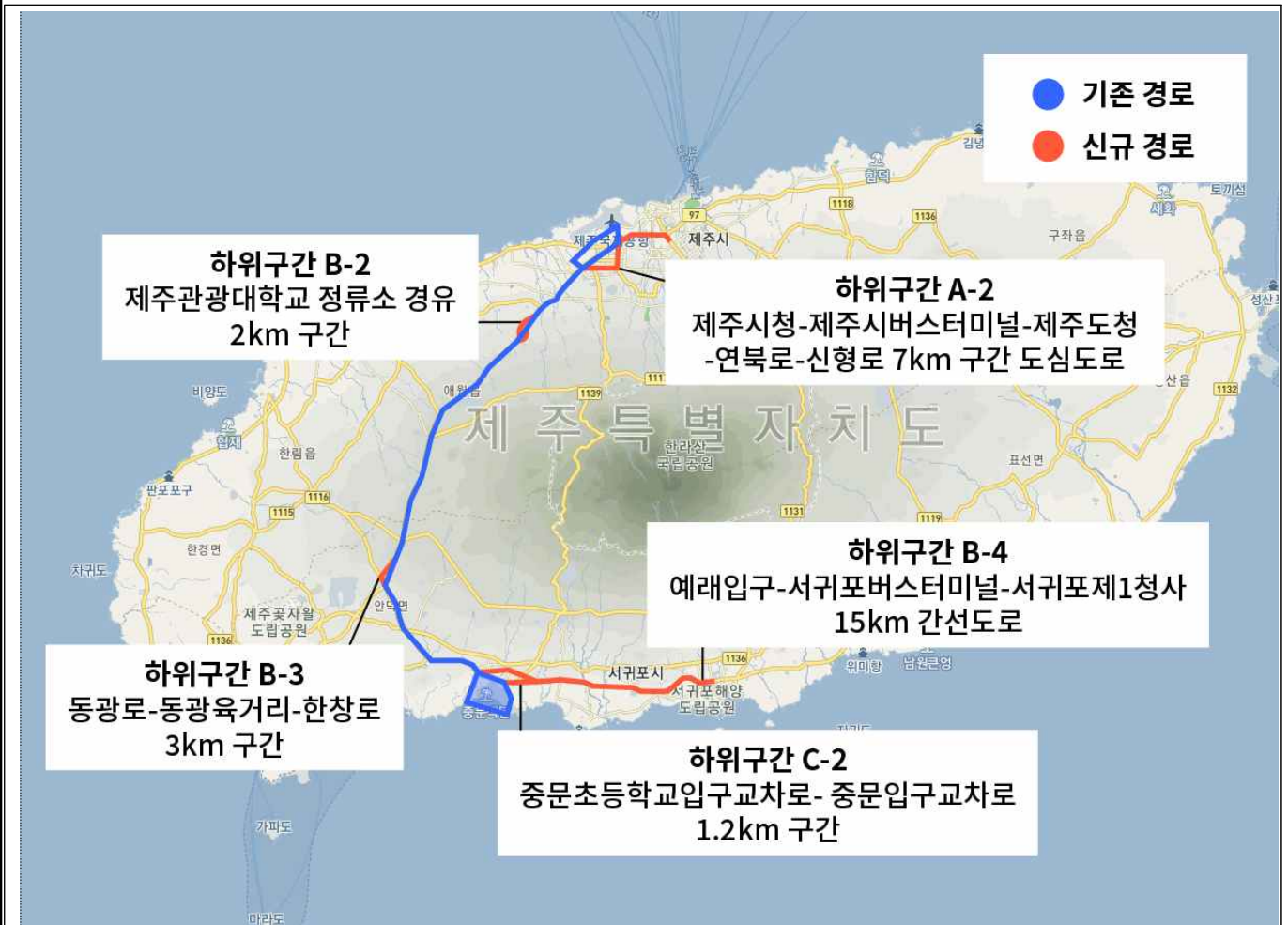
- 명칭 : 제주(제주시청-서귀포1청사) 자율주행차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제주특별자치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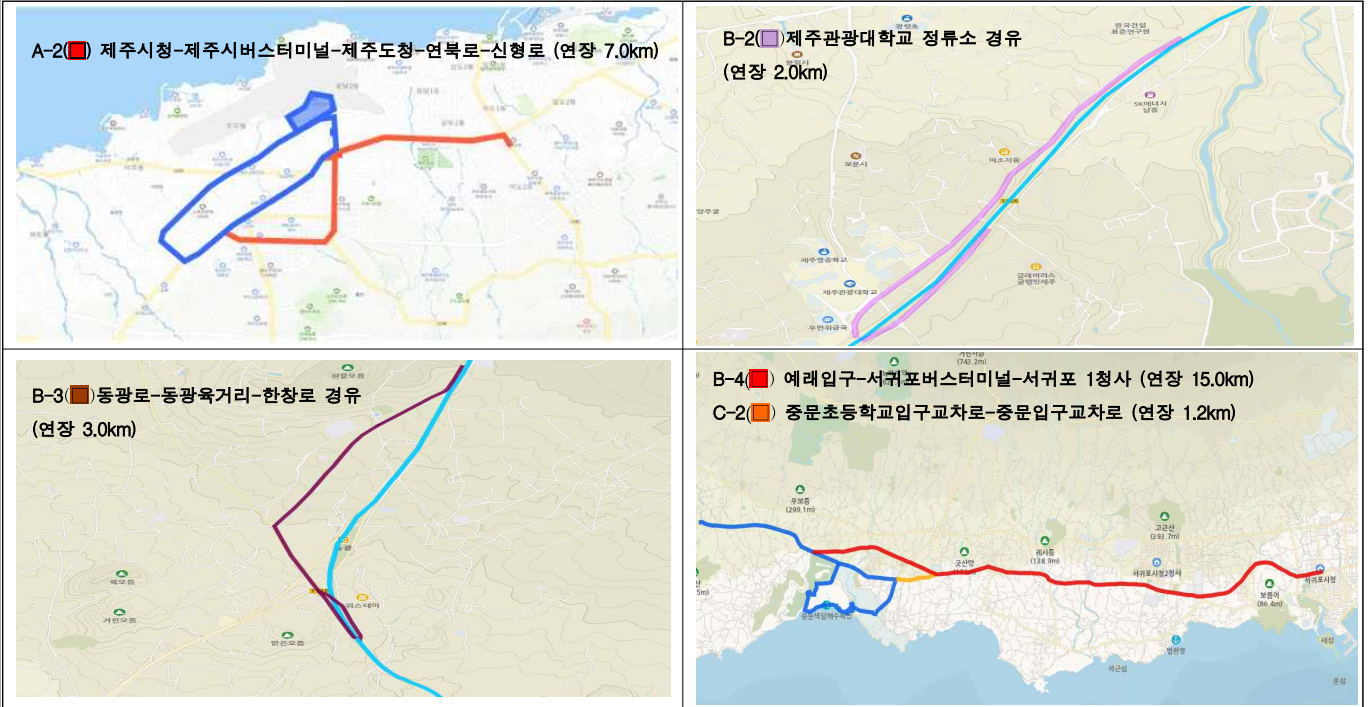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위치 및 구간 | 면적 | 연장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A-1 | 제주국제공항 일원, 제주국제공항-노형로 시내구간 | 0.117km ² | 8.31km |
| B-1 | 평화로-한창로-일주서로 | | 32.27km |
| C-1 | 천제연로, 중문관광단지 | 2.109km ² | 1.02km |
| A-2 | 제주시청-제주시버스터미널-제주도청-연북로-신형로 | | 7.0km |
| B-2 | 제주관광대학교 정류소 경유 | | 2.0km |
| B-3 | 동광로-동광육거리-한창로 | | 3.0km |
| B-4 | 예래입구-서귀포버스터미널-서귀포 1청사 | | 15.0km |
| C-2 | 중문초등학교입구교차로-중문입구교차로 | | 1.2km |
| 계 | | 2.226km ² | 69.8km |

* A-1, B-1, C-1 : 1차지정('20.12.8), A-2, B-2, B-3, B-4, C-2 : 6차지정('23.12.5)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○ 추가지정구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목적 일부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0-904호 참조)

○ 지정목적

- 국내외 관광객 대상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기여
- 제주의 다양한 도로·기후·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
-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(C-ITS)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지원하여 스마트 교통시스템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

○ 지정기간 : '23. 12.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: 서비스 지원 허가조건 등 일부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0-904호 참조)

○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서비스

- 제주시청과 서귀포제1청사를 기·종점으로 하여 버스 정류소를 정차 지점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차 여객 노선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적용되는 규제 특례

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신호정보·교통정보 등을 C-ITS 인프라를 통해 제공
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등 노면표시 등 설치
 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안전운행 관련 규정 마련
- 시범운행지구 지원 방안
- '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'를 통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 예산 확보·지원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
· 허가조건

- 특례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,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운행 중 기상악화 등 비상시 대응 요령도 포함해야 함
- 여객운송계획,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기술 등에 대해서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-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
- 특례 신청자의 영업 상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행 운행 실적 등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공

· 허가대수의 상한 대수: 총 5대 이하

· 운행구간

- 제주시청 ~ 서귀포1청사까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(면적 2.226km², 연장 69.8km)
- 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하위법령,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름
-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 상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함
-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발생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-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제주특별자치도(<https://www.jeju.go.kr>)
- 문 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(064-710-2652)

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대전광역시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|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
| 1 | 오송역~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~반석역 BRT 구간 | | 32.2km |
| 2 | 세종 내부순환 BRT도로 우측 | | 12km |
| 3 | 오송역~청주공항 | | 26km |
| 4 | 반석역~카이스트 | | 17.1km |
| 계 | | | 87.3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(국토부 고시 제2022-678호 참조)

○ 지정목적

- 광역 지자체 간 장거리 여객운송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주행 기반 광역교통체계를 선도하고 충청권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
- 충청권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, 노선 다변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국가적인 기술 효과 달성 및 국가적 자율주행 광역교통 시대 완성에 기여

○ 지정기간 : '23. 12. 5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2-678호 참조)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·구간

- 오송역~국책연구단지(내부순환 BRT 우측)~반석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
- 청주공항~오송역~세종터미널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
- 세종터미널~반석역~카이스트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, 정비시설 제공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등, 제공방법 등은 관할 시·도가 별도 공고)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(관할 시·도의 예산범위 내,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관할 시·도가 별도 공고)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, 필요시 도로노면표시,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내부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전용승강장 설치
-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, 날씨, 행사 등의 정보 수집·제공
-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(관할 시·도가 별도 고시)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
· 허가조건

-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운행 예정 구역에 대한 자율주행차량이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, ODD Exit 상황 발생시 대응 방안 수립이 되어 있어야함
-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야 함
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10대 이하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시범운영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항상 탑승하여야 함
 - 각 종점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여야 함
 -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
 - 관할 시·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 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 시·도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 - 기상·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·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
 -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영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
 -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
-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(추가)
 -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고 관할 시·도 및 유관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제출 필수

○ 기타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시 운행구간·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은 관할 시·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
- 한전운수면허 발급 요건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·도가 별도 공고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(www.sejong.go.kr) / 문의처 : 경제정책과(044-300-4034)
-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 / 문의처 : 산업육성과(043-220-8474)
-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jeon.go.kr) / 문의처 : 교통정책과(042-270-5728)

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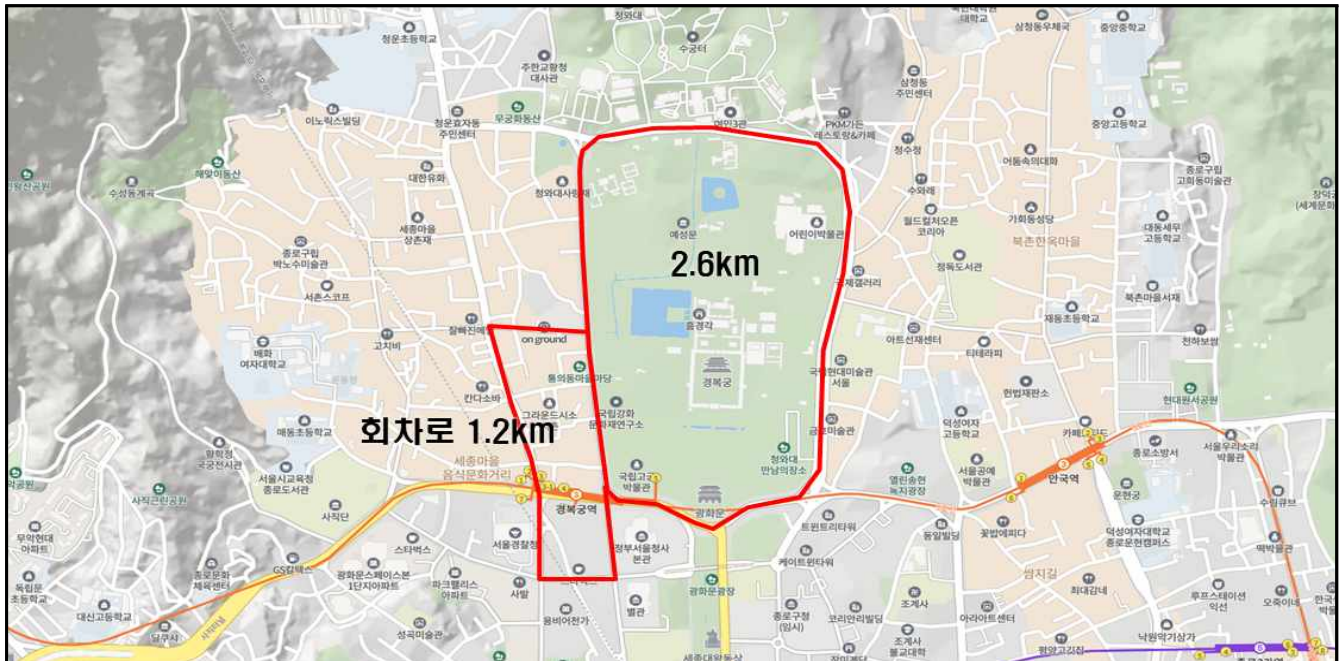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서울 청와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서울특별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|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(청와대로~사직로~삼청로~효자로) | 2.6km |
| 2 |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차로(자하문로~사직로~새문안로) | 1.2km |
| 계 | | 3.8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5.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(무상) | 청와대-경복궁 순환 노선을 운행 | 2대 |

※ 정정사유 : 5차지정(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유상운송계획 → 무상운송계획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서울특별시 조례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, 제정 이후)
- 관련 고시·공고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⇨ 서울소식 ⇨ 공고 ⇨ 고시공고(www.seoul.go.kr/news)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(02-2133-4963)

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서울특별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(여의서로) | 1.1km |
| 2 | 서울특별시 국회 서비스 운영 노선(국회내부) | 1.9km |
| 3 | 서울특별시 국회둔치주차장내 도로 | 0.1km |
| 계 | | 3.1km |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5.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여객의 무상운송계획에 관한 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(무상) | 둔치주차장-국회 내부 순환 노선을 운행 | 2대 |

※ 정정사유 : 5차지정('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유상운송계획 → 무상운송계획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서울특별시 조례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, 제정 이후)
- 관련 고시·공고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⇨ 서울소식 ⇨ 공고 ⇨ 고시공고(www.seoul.go.kr/news)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(02-2133-4963)

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
1. 시범운영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
- 관할 시·도 : 충청남도

2. 시범운영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주변 홍보 및 탑승 체험 구간 | 2.5km |
| 2 | 내포신도시 내 방법순찰 구간 | 7km |
| 3 |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단속 구간 | 5km |
| 계 | | 14.5km |

3. 시범운영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5. 시범운영지구의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
| 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무상 서비스 (자율차 승용형 1대, 승합형 1대) | 서비스가 안정화 되기까지 기한을 정하여 무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수의 상한 | 2대 |

※ 정정사유 : 5차지정('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허가상한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문의처 : 충남도청 도로철도항공과 미래도로항공팀(041-635-4695)

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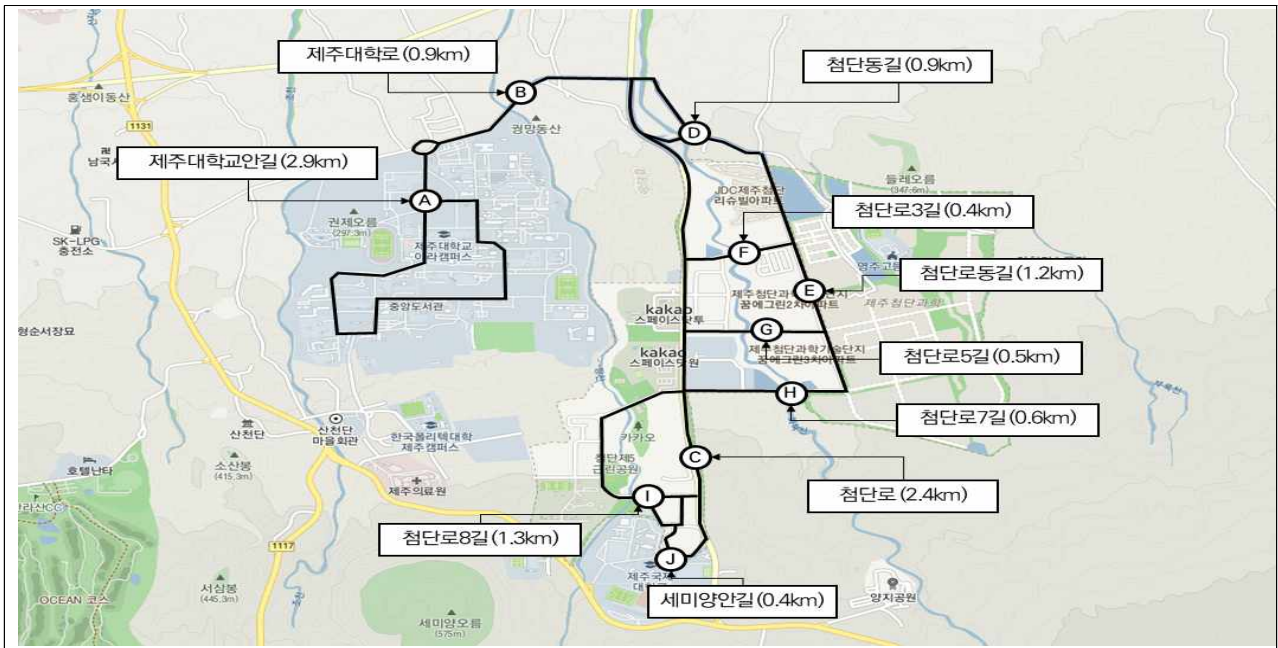
- 명칭 :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제주특별자치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| 구분 | 위치 | 연장 또는 면적 |
|----|--|----------|
| A | 제주대학교안길 (제주대정문(입구)~제주대정문(출구)) | 2.9km |
| B | 제주대학로 (제주대정문~월평1교앞교차로) | 0.9km |
| C | 첨단로 (월평1교앞교차로~세미양빌딩 입구) | 2.4km |
| D | 첨단동길(월평1교앞교차로~JDC행복주택, 첨단로 진입부~JDC행복주택) | 0.9km |
| E | 첨단로동길 (JDC행복주택~첨단로7길 진입부) | 1.2km |
| F | 첨단로3길 (첨단로 진입부~첨단로동길 진입부) | 0.4km |
| G | 첨단로5길 (첨단로 진입부~첨단로동길 진입부) | 0.5km |
| H | 첨단로7길 (첨단로 진입부~첨단로동길 진입부) | 0.6km |
| I | 첨단로8길(첨단로 진입부(북)~첨단로 진입부(남), 첨단5교~세미양빌딩) | 1.3km |
| J | 세미양안길 (세미양빌딩 입구~첨단로8길 진입부) | 0.4km |
| 계 | | 11.5km |

※ 정정사유 : 5차지정('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D길이 정정)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(제주대학로 B, 첨단동길 D 길이 정정)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5.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제주특별자치도청 (www.jeju.go.kr)
- 문 의 처 :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자율주행산업팀(064-710-2652)

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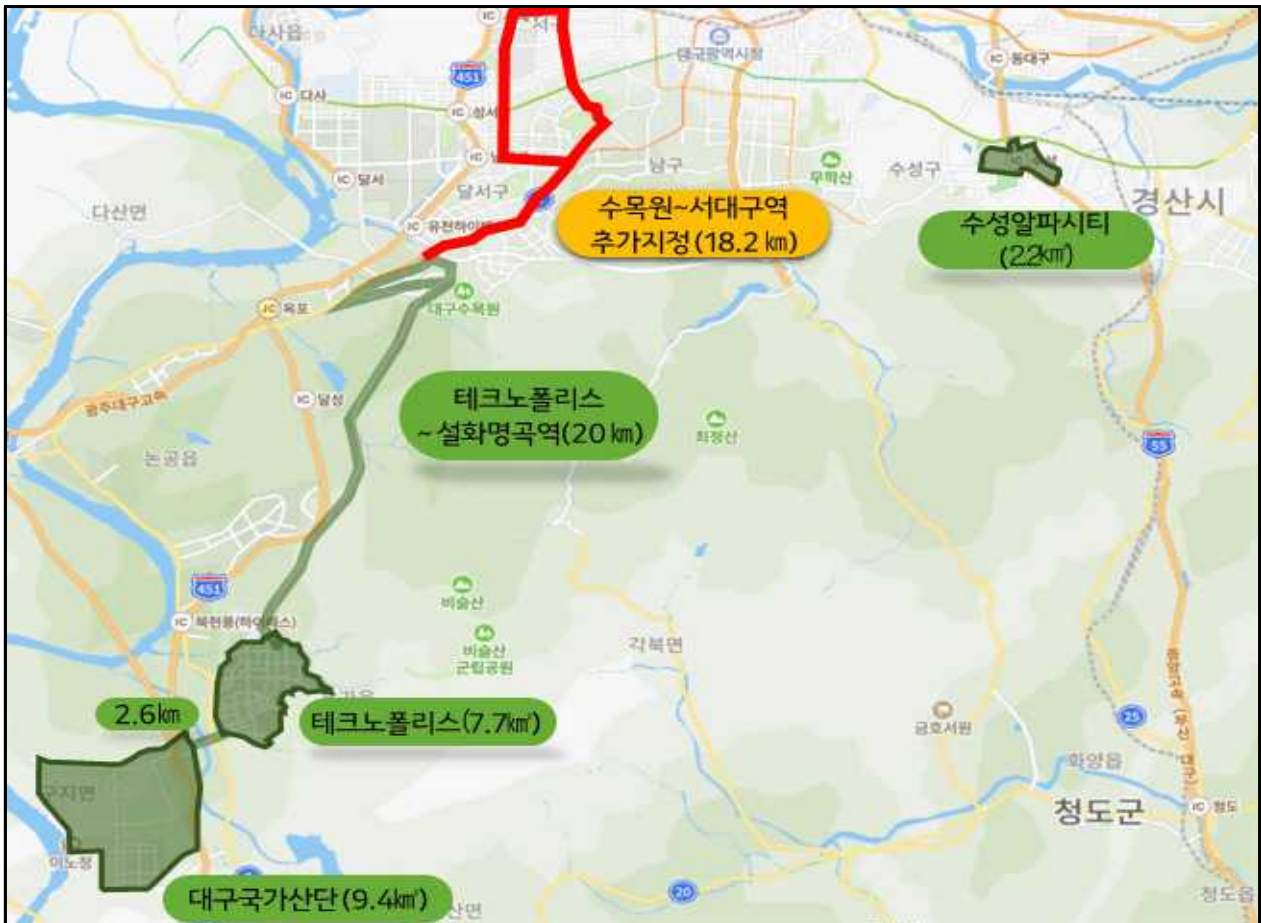
- 명칭 :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대구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총연장정정)

| 구분 | 위치 | 면적 | 연장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|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·삼덕·시지·노변동 일원(수성알파시티) | 2.2km ² | |
| 2 |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·유가읍 일원(대구테크노폴리스) | 7.7km ² | |
| 3 |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(대구국가산업단지) | 9.4km ² | |
| 4 |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일원(대구테크노폴리스-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) | | 2.6km |
| 5 | 대구광역시 달성군 설화명곡역~테크노폴리스로 | | 20.0km |
| 6 |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수목원~서구 이현동 서대구역 | | 18.2km |
| 계 | | 19.3km ² | 40.8km |

* 1~4번 : 1차지정("20.12.8), 5번 : 3차지정("22.6.24), 6번 : 5차지정("23.6.27)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 5. 시범운영지구의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0대

| 구 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|----|
| 마을버스 | 수성알파시티 도심지 내 순환형 마을버스 유상 운송 서비스 | |
|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 | 서구 이곡동 서대구역 ~ 대구수목원 ~ 테크노폴리스로,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도심지 내 승용차 기반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| |
| 연구개발실증 | 테크노폴리스로~ 수목원 일대 자율주행혁신사업 기술개발실증 | |

※ **정정사유** : 5차지정('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서비스내용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대구광역시(<https://www.daegu.go.kr>) ⇨ 정보공개 ⇨ 알림정보 ⇨ 고시공고
- 문 의 처 :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(053-803-6382)

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서울특별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
| 구분 | 위치 | 면적 또는 연장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서비스 운영 노선(1개 도로 총 6.4km) | 6.4km |
| 2 |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등 회차 노선(8개 도로 총 2.4km) | 2.4km |
| 3 |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등 회차 노선(3개 도로 총 1.1km) | 1.1km |
| 계 | | 9.9km |

* 1~2번 : 3차지정('22.6.24), 3번 : 5차지정('23.6.27)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(지형도 정정)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: 변경 없음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5.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: 아래사항 변경(국토부 고시 제2023-342호 참조)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

| 구분 | 연장(km) | 운행경로 | 대수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운영 노선 | 6.4 | 청계광장~청계6가~청계광장(6.4km, 왕복) | 5대 |
| 회차로(수동주행) | 3.5 | 새문안로, 사직로, 삼일대로 등 | - |
| 합계 | 9.8 | - | - |

※ 정정사유 : 5차지정('23.6.27) 오기 내용 정정(연장)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서울특별시 조례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, 제정 이후)
- 관련 고시·공고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⇨ 서울소식 ⇨ 공고 ⇨ 고시공고(www.seoul.go.kr/news)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(02-2133-4963)